D - 6 - 2012

#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

2012. 7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한국안전 E&C 이 헌창

O 개정자: 이 정 석

- O 제 · 개정 경과
  - 2009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ANSI/ASHARE Standard 15-2007, Safety Standard for Refrigeration Systems
- O 관련법규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(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)

O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D - 6 - 2012

#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냉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및 폭발, 그리고 설비의 파손과 같은 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냉동 시스템의 구조, 설치, 운 전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냉동 시스템의 설계, 구조, 시험, 설치, 운전에 적용한다.

# 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배압(Back pressure)"이란 배출 라인에서 압력으로 인한 압력 방출 장치의 출구 쪽에서 생기는 정압을 말한다.
  - (나) "이중차단밸브(Block valves)"란 밸브를 개방 전 연결 또는 닫힌 후 분리되는 시스템의 구간에 허용되는 차단밸브의 한 쌍을 말한다.
  - (다) "압축장치(Compressor unit)"란 원동기와 부속품을 가지는 압축기를 말한다.
  - (라) "응축장치(Condensing unit)"란 하나 이상의 동력 압축기, 응축기, 액체 리시버, 부속품의 결합을 말한다.
  - (마) "헤더(Header)"란 여러 개의 지류 배관 또는 튜브로 유체를 공급하거나 수급하기 위한 모(母)배관을 말한다.
  - (바) "액체저장용기(Liquid receiver)"란 액체 냉매의 저장을 위해 입구와 출구 배관 에 의해 냉동 시스템에 영구히 연결된 용기를 말한다.

D - 6 - 2012

- (사) "기계실(Machinery room)"이란 압축장치와 압력 용기를 포함하는 장소를 말한다.
- (아) "고압측(Highside)"란 냉동 시스템에서 기화된 냉매를 응축시키기 위하여 응축 압력에 가깝게 가압된 냉동 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.
- (자) "저압측(Lowside)"란 냉동 시스템에서 응축된 냉매를 증발시키기 위하여 증발 기 압력에 가깝게 감압된 냉동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냉동시스템의 설계 및 구조

#### 4.1 재질

- (1) 냉동시스템의 구조와 설치에 사용된 재질은 사용된 냉매의 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. 재질은 공기 또는 습기의 존재 하에서 냉매, 윤활제, 이들 혼합물로 인한 퇴화가 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2) 알루미늄, 아연, 마그네슘, 또는 이들 합금은 염화메틸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. 마그네슘 합금은 할로겐화 냉매와 접속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.
- (3) 동(Copper)과 동합금은 암모니아와 접촉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. 암모니아 시스템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압력 방출장치 또는 가용전의 배출 배관에 사용되는 재질은 냉매에서 요구된 재질과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기로 방출될 때, F 타입의 맞대기 용접 배관은 허용된다.

# 4.2 시스템 설계압력

(1) 설계압력은 최대 운전, 예비, 또는 선적 조건하에 압력 상승보다 높아야 한다. 냉동

D - 6 - 2012

설비는 3.12 kPa(29.0 in. Hg) 진공압으로 설계해야 한다. 브롬화 리튬(lithium bromide) 흡수 시스템의 설계압력은 34.7 kPa(5 psig) 게이지압력 이상이어야 한다. 냉동시스템의 설계압력은 103.4 kPa(15 psig) 게이지압력 이상이어야 한다.

- (2) 운전, 예비, 선적 상태에서 압력을 예상하지 못한다면, 고압측 또는 저압측에 대한 설계압력은 냉매의 표준압력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.
- (3) 충진 시스템 부분이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될 때, 설계압력은 압력방출 장치의 설정치 이상이어야 한다.
- (4) 압력용기에 연결된 부분은 압력 용기 이상의 설계 압력을 가져야 한다.

# 4.3 냉매 포함 압력 용기

# 4.3.1 103.4 kPa(15 psig) 초과 압력 용기

- (1) 게이지압력 103.4 kPa(15 psig)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압력방출 장치 또는 가용전으로 보호해야 한다.
- (2) 용기 보호를 위해 압력방출 장치가 사용된다면, 보호된 압력 용기의 극한 강도는 설계압력의 3배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용기 보호를 위해 가용전이 사용된다면, 보호되는 압력 용기의 극한 강도는 가용전의 온도에서 사용된 냉매의 포화압력 또는 임계압력의 2.5 배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
# 4.3.2 103.4 kPa(15 psig) 이하 압력 용기

게이지압력 103.4 kPa(15 psig) 이하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용기는 설계 압력의 최소 3배에서 견딜 수 있는 극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, 설계압력의 1.25 배 이상 가압 시험을 하거나 설계 압력의 1.5 배 이상의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.

D - 6 - 2012

# 4.4 압력 완화시스템

#### 4.4.1 압력 방출

- (1) 냉동시스템은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화재 또는 다른 비정상 조건에서 안전하게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.
- (2) 460 mm(18 in.) 이하의 다운 스트림 또는 업 스트림에 위치한 가열 코일식 증발기는 건물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방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압력방출 장치는 압력에 의해 직접 작동되거나 파일로트(Pilot)로 조작되어야 한다. 파이로트 조작 압력방출 밸브는 독립 작동이고, 주 밸브는 설정압력에서 자동적으로 열리며, 파이로트의 일부분이 고장이라면 최대 속도로 방출하여야 한다.
- (4) 스톱밸브는 압력방출 장치와 보호되는 시스템 부분 사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. 이중 안전밸브가 사용된다면, 3방 밸브는 스톱 밸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.
- (5) 안전밸브가 공통 방출 헤더로 방출하기 위해 연결되었다면, 전면 스톱밸브는 릴리 프밸브와 공통 헤더 사이의 방출 배관에 설치할 수 있다. 스톱밸브가 설치될 때, 스톱밸브가 열림 위치에서 잠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. 방출 스톱밸브는 다음 조건 중의 하나가 있지 않다면 닫지 않아야 한다.
  - (가) 병렬 안전밸브가 시스템 또는 용기를 보호하도록 설치됨
  - (나) 보호되는 시스템 또는 용기가 감압되고 대기로 벤트됨
- (6) 압력방출 장치는 압력용기 또는 보호되는 시스템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. 압력방출 장치는 액체 냉매 높이 이상에서 연결되고, 검사 및 보수 작업에 접근이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다만, 가용선이 고압측에 사용된다면, 액체 냉매 높이 아 래 또는 위 중 하나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(7) 시트와 디스크 압력방출 장치는 냉매 또는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. 주철(cast iron)의 시트 또는 디스크는 사용될 수 없다.

D - 6 - 2012

# 4.4.2 압력방출 장치의 선정

- (1) 압력방출 밸브는 보호된 시스템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.
- (2) 파열판(Member)은 보호된 시스템 부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파열 압력을 설정하여야 한다. 안전밸브의 전단에 설치된 파열판 크기는 안전밸브 입구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.

# 4.4.3 압력 용기 보호

- (1) 액체 냉매를 포함하는 압력 용기는 과압 보호를 위해 압력방출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.
  - (가) 0.085 m³(3 ft³) 이하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가용전 또는 압력방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.
  - (나) 0.085 m³(3 ft³)에서 0.285 m³(10 ft³)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압력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, 가용전은 사용될 수 없다.
  - (다) 0.285 m³(10 ft³) 이상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파열판 또는 이중 압력방출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. 이중 압력방출 밸브는 시험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삼방 밸브로 설치한다.
  - (라) 단일 안전밸브는 0.285 m³(10 ft³) 이상의 압력 용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,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.
    - ① 안전밸브는 시스템의 저압측에 위치한다.
    - ② 압력 용기의 냉매 충진 펌프를 정지 할 수 있도록 차단 밸브가 제공되어야 한다.
- (2) 시스템의 저압측으로 방출하는 압력방출 밸브의 경우, 단일 안전밸브는 0.285 m<sup>3</sup> (10 ft<sup>3</sup>) 이상 용기에 사용될 수 없다.
- (3) 액체 냉매를 포함하는 대용량 용기는 두 개 이상의 압력방출 장치 또는 병렬로 이

D - 6 - 2012

중 압력방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.

(4) 각 압력 용기의 압력방출 장치 또는 가용전의 최소요구 배출용량은 다음 식(1)에 의해 결정된다.

$$C = f(DL) \qquad \cdots \qquad (1)$$

여기서 C = 분(min)당 공기의 방출 장치의 최소요구 배출용량 [kg/min]

D = 용기 외경 [m]

L = 냉매 의존 인자

- (5) 압력방출 밸브와 시스템 부분 사이 모든 배관과 부속류는 압력방출 밸브 입구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- (6) 분당 표준 흐름 조건하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파열판 또는 가용전의 배출 용량은 다음 식(2),(3) 및(4)에 의해 결정된다.

$$C = 0.64 P_1 d^2 \quad (C = 1.09 \times 10^{-6} P_1 d^2) \quad \dots$$
 (2)

$$d = 1.25 (C/P_1)^{0.5} (d = 958.7 (C/P_1)^{0.5}) \dots (3)$$

여기서 C = 분당 공기의 배출 용량[kg/min]

d = 입구 배관, 플랜지, 가용전, 파열판의 최소 내경[(mm)]

파열판의 경우는

 $P_1 = (rated pressure \ kPa \times 1.10) + 101.33$  ······· (4) 여기서 가용전의 경우  $P_1$ 은 가용전 녹는 온도에서의 절대 포화압력 또는 사용된 냉매의 임계압력 중 더 작은 값이다.

# 4.4.4 압력 제한 장치

- (1) 압력 제한 장치는 대기압 이상에서 운전하는 모든 시스템에 제공되어야 한다.
- (2) 압력 제한 장치의 최대 설정값은 시스템의 고압측에 설치된 압력배출 장치 설정치의 90% 또는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고압측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수 없다. 압력 제한 장치는 최고 설정 미만 압력에서 압력 배출을 정지시켜야한다.

D - 6 - 2012

(3) 압력 제한 장치는 압력을 부과하는 부분과 배출 측의 스톱밸브 사이에 연결되어야 한다. 압력 제한 장치는 연결된 배관의 스톱밸브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# 4.5 냉매 배관, 밸브 및 부속류

- (1) 103.4 kPa(15 psig) 이상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냉매 배관, 밸브, 부속 류 및 관련 부분은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.
- (2) 냉동 시스템의 모든 부분 또는 이음매는 누설 없이 371.1 °C(700 °F)의 온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액체 레벨 게이지 글라스 칼럼은 자동 차단 밸브를 가져야 한다. 모든 글라스 칼럼 은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Bull-eye 형태 액체 레벨게이지 글라스는 제외한다.
- (4) 압력 게이지가 냉동 시스템의 고압측에 설치되었다면, 설계압력의 1.2배 이상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5) 액체저장용기가 사용된다면, 펌프 정지 동안 냉매 저장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부분 또는 액체저장용기는 냉매 저장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. 액체는 냉매의 온도가 32 ℃(90°F) 이상일 때 부피 90% 이상 점유해서는 안 된다.

#### 4.6 서비스 제공

- (1) 냉동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요소는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.
- (2) 인클로져를 가지는 응축장치 또는 압축장치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모든 시스템은 필요시, 액체와 증기 전달 밸브, 전달 압축기 또는 펌프, 냉매 저장 탱크 또는 재순환, 재생 장치로부터 제거를 위해 밸브로 연결되어야 한다.
- (4) 3 kg(6.6 lb) 이상의 냉매를 포함 시스템은 다음 위치에서 스톱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.
  - (가) 각 압축기,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흡입 입구

D - 6 - 2012

- (나) 각 압축기,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
- (다) 각 액체 저장용기 출구
- (5) 50 kg(110 lb)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다음 위치에서 스톱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.
  - (가) 각 압축기, 압축장치, 응축장치의 흡입 입구
  - (나) 각 압축기, 압축장치, 응축장치의 배출 출구
  - (다) 각 액체 저장용기의 입구, 저장용기가 응축기 또는 응축장치의 내부 부분이거 나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
  - (라) 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
  - (마)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응축기가 병렬로 사용될 때 응축기의 입구와 출구
- (6) 스톱 밸브는 흐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밸브 표식 문자는 12.7 mm(0.5 in) 높이 이상의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.

# 5. 설치 시 고려사항

# 5.1 일반 고려사항

- (1) 응축장치 또는 압축장치를 위한 기초과 지지는 불연성 구조이어야 하고,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이동 기계는 승인된 안전 표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.
- (3) 응축장치, 압축장치, 응축기, 스톱 밸브, 냉동 기계에는 비상정지, 검사, 서비스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.
- (4) 물의 공급 및 배출 연결은 승인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- (5) 전기 설비와 배선은 관련 코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- (6) 냉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연료 장치 및 설비는 승인된 안전 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.
- (7) 기계 냉동을 사용하는 에어컨 설비의 공기 덕트 시스템은 승인된 안전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.
- (8) 점유 공간에서 냉동 시스템의 연결부와 모든 냉매 포함 부분은 누설 없이 371.1 ℃ (700°F)의 온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9) 대지에 수직인 냉매 배관의 이음매는 덮거나 밀폐하되 육안 검사를 위해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한다.

# 5.2 냉매 배관 위치

- (1) 개방된 공간을 가로지르는 냉매 배관은 배관이 천장에 위치해있지 않다면 바닥 위로 2.2 m(7.25 ft) 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냉매 배관은 엘리베이터, 운반용 승강기, 이동 물질을 포함하는 축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.
- (3) 냉매 배관은 바닥, 천장, 지붕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.
  - (가) 지하와 1층을 연결하는 관통
  - (나) 최고층과 기계실 지붕 설치를 연결하는 관통
  - (다) 냉동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 인접 층을 연결하는 관통
  - (라) 냉매 배관은 관통하는 공간에 대해 <별표 1>의 량을 초과하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 연결
- (4)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냉매 배관은 턱트 내에 넣어야 한다. 냉매 배관은 차단할 수 있으며, 진동 손상, 응력,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# 5.3 냉동 기계실

- (1) 냉동 기계실은 서비스, 유지, 운전을 위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이어야 한다.
- (2) 냉동 기계실의 문은 틈이 없고, 밖으로 열리며, 자동으로 닫힐 수 있어야 한다.
  - (가) 비상시 탈출 인원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한다.
  - (나) 공기 덕트와 공기 조화기에 접근하기 위한 문을 제외하고,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냉매는 누설되어서는 안된다.
- (3) 냉동 기계실은 냉매가 누출될 수 있는 지점에 감지기를 설치하고, TLV-TWA 이 하에서 강제 배기와 경보를 작동해야 한다.
  - (가) 경보는 냉동 기계실 내부와 입구 외부에서 육안 및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.
  - (나) 경보는 냉동 기계실 내부에서 재기동(reset)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기계실은 외부로 강제 배기 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강재 배기는 5.3항의 (6)호의 방법에서 제시된 최소량을 기계실로부터 배출을 위해, 하나 이상의 동력 팬을 갖추어야 한다.
  - (가) 공기 흡입 개구부는 재순환을 피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.
  - (나) 기계실에 공기 공급과 배출 덕트는 다른 지역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.
  - (다) 배기는 방해 또는 위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.
- (6) 시스템의 누출 또는 파열로 축적된 냉매를 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재 배기량은 다음 식 (5)에 따라 산출한다.

$$Q = 100 \times G^{0.5}(Q = 70 \times G^{0.5})$$
 .....(5)

여기서 Q = 공기 흐름[L/min (cfm)]

G = 시스템에서 냉매 량으로 기계실에 위치한 량[kg (lb)]

(가) 냉동 기계실 강재 배기는 기계실 면적 당 2.54 L/s/m² 또는 1인당 9.44 L/s 이상이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- (나) 최대 온도 50 °C(122 °F) 또는 흡입 공기 온도 보다 10 °C(18 °F) 높은 온도 이 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.
- (7) 연소 설비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냉매를 포함한 설비는 동일 한 기계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
  - (가) 연소 공기는 기계실 외부로부터 덕트에 의해 보내지고 연소 챔버는 냉매 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밀봉되어야 한다.
  - (나) 냉매 감지기는 냉매 누출 사고에서 연소 공정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.
    - ① 이산화탄소(R-744) 또는 물(R-718) 냉매를 사용하는 기계실
    - ② 암모니아(R-717) 냉매를 사용하는 기계실
- (8) 공기 조화기의 접근 문과 판널은 가스켓으로 완전 밀폐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9) 냉동 기계실에 접근은 권한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. 문에는 제한을 알리도록 표시되어야 한다.
- (10) 기계실은 427 ℃(800 °F) 이상의 뜨거운 표면 및 불꽃 생성 기구는 없어야 한다.
- (11) 건물의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며. 견고한 방화문이어야 한다.
- (12) 다른 점유 공간으로부터 냉동 기계실을 분리하는 벽, 바닥, 천장은 불연성 구조로 한 시간 이상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13) 외부 개구부가 있다면, 개구부는 화재 탈출구 또는 대피 계단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.
- (14) 내부 벽, 천장, 바닥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은 완전 밀봉되어야 한다.
- (15) 인화성 냉매가 사용될 때, 기계실은 폭발위험장소 1종장소에 적합해야 한다. 단, 암모니아 및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(16) 기계 설비의 원격 조작은 비상시 설비를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기계실 문 외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- (17) 암모니아 냉매에 대한 수동 비상 배출 또는 방산 방법은 제공되어야 한다.
- (18) 퍼지 시스템의 배출은 압력방출 장치와 가용전과 같은 방법에 의해 관리되고, 이들 장치에 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.

# 6. 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

- (1) 냉매의 양은 <별표 1>에서 제시된 량을 초과할 수 없다. <별표 1>에 나열되지 않은 냉매 혼합의 경우, 각 조성의 량은 같은 방법으로 제한된다.
- (2) 냉매 제한 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피는 냉매 누출 사고에서 냉매 배출압에 대한 공간의 부피에 근거한다.
  - (가) 냉동 시스템 또는 일부가 덕트 또는 개방구를 제외한 밀폐 공간에 위치한 곳이고, 다른 층이 개방 중앙 홀 또는 중2층 배열을 통해 연결하는 곳에서, 냉매 제한 량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부피는 2.5 m(8.2 ft)과 최소 공간의 바닥 면적을 곱합하여 결정한다.
  - (나) 냉동 시스템 또는 일부가 공기 정화장치, 공기 분배 덕트 시스템, 기계적 환기 시스템이 있는 곳의 최악 경우 또는 최소 부피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.
    - ① 공기 분배 시스템에서 폐쇄는 고려되어야 한다. 병렬로 배열된 하나 이상의 공간은 냉매 누출원으로 부터 차단될 수 있어야 하고, 부피는 계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    - ② 매단 천장 위의 공간은 공간이 공기 공급 또는 회수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면 시스템에서 냉매 제한 량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.
    - ③ 공급과 회수 덕트, 플리넘(Plenums)의 부피는 시스템에서 냉매 제한 량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.
- (3) 암모니아(R-717)와 암모니아 이외의 가연성 냉매 총량은 승인자에 의해 승인 없이 500 kg(1100 lb)를 초과할 수 없다.
- (4) 일반 복도 또는 로비에 설치된 냉동 시스템은 <별표 1>에 나타낸 가연성 냉매 량 미만이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- (5) 회수 냉매는 제거된 시스템을 제외하고 재생될 수 없다. 오염이 퇴색, 냄새, 산 시험 결과, 다른 시스템 이력에 의해 명백할 때, 회수 냉매는 재생하기 전에 6항의 (7)호에 따라 재생되어야 한다.
- (6) 재생 냉매는 제거된 시스템처럼 동일 냉매, 윤활유, 동일 설비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외하고 재생될 수 없다. 오염은 퇴색, 냄새, 산 시험 결과, 다른 시스템 이력에 의해 명백할 때, 회수 냉매는 재생하기 전에 6항의 (7)호에 따라 재생되어야 한다. 다만, 물이 냉매이거나, 흡수를 위해 사용되거나, 첨가제 인 곳의 재생 냉매를 사용하기 위한 곳에서는 제외한다.
- (7) 사용 및 오염된 냉매는 다른 설비에서 재생 및 사용될 수 없다.
- (8) 명칭이 다른 혼합 냉매를 포함하는 냉매는 시스템에서 혼성될 수 없다. 다만, 2차 냉매의 첨가는 낮은 온도에서 오일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비 제조자에 의해 명시된 곳에서는 허용된다. 냉매와 첨가된 량은 제조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- (9) 시스템에서 냉매 또는 윤활유의 형태는 적합성 평가, 승인자와 사용자 고시, 안전 요구 준수, 서명과 확인의 교체 또는 부가 없이 변경될 수 없다.
- (10) 고 가연성 냉매는 승인자에 의한 승인된 곳을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다. 다만, 1 인당 공간  $9.3 \text{ m}^2(100 \text{ ft}^2)$  이상의 실험실에 적용할 수 없다.

# 7. 안전취급

# 7.1 운전과 시험

- (1) 압축기, 응축기, 증발기, 안전장치, 압력 게이지, 통제계열, 시험된 시스템을 제외하고, 모든 시스템의 냉매 포함 부분은 시험되어야 하고 완전 설치 후와 운전 전에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한다. 각 시스템의 고압측과 저압측은 시험되어져야 하고 각시스템의 고압측 또는 저압측을 보호하는 압력 배출 장치의 설정 또는 설계 압력이상에서 제공되어야 한다.
- (2) 시험은 건조 질소, 불연성 또는 비활성 건가스로 수행된다. 산소, 공기, 혼합물 등은 사용될 수 없다. 시험 압력 증강에 사용되는 방법은 출구 측에 게이지와 압력

D - 6 - 2012

제한 장치 또는 압력 감소 장치 중의 하나로 한다. 압력 방출 장치는 시험 압력 이상 설정하여야 하나 시스템 요소의 변형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낮아야 한다.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- (가) 건조 질소, 불활성 가스, 5% 초과하지 않는 냉매 질량 분율의 농도에서 비가연 성 냉매 화합물의 혼합은 시험에 허용된다.
- (나) 건조 질소, 불활성 가스, LFL의 5% 또는 25%의 냉매 질량 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농도에서 가연성 냉매 화합물의 혼합은 시험에 허용된다.
- (다) 냉매 없이 압축된 공기는 시스템이 냉매 충전 전에 132 Pa 이하로 비워져 제공된 시험에 대해 허용된다. 요구된 배출 수준은 물(R-718) 또는 이산화탄소 (R-744) 냉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대기압이다.
- (라) 16 mm(0.62 inch) 외경 미만 동관을 갖는 시스템은 최소 20 ℃(68 °F)에서 냉매의 응축 증기압에서 시스템에 충전된 냉매의 방법에 의해 시험된다.

# 7.2 표시와 식별

- (1) 각 냉동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.
  - ① 설치자의 이름과 주소
  - ② 냉매 번호와 냉매 량
  - ③ 윤활유 밀도와 량
  - ④ 현장 시험 압력
- (2) 50 kg(110 lb) 이상 냉매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명시된 높이에 12.7 mm(0.5 inch) 이 상 글씨로 표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.
  - ① 냉매 흐름, 통풍, 냉매 압축기를 관리하기 위한 밸브 또는 스위치
  - ② 기계실 외부 노출 배관에 포함된 냉매 또는 2차 냉각제의 종류
- (3) 냉매 또는 윤활제의 종류가 변경된다면, 사용된 냉매와 윤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는 교체되거나 없다면 추가되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(4) 냉동 기계실 각 입구는 "기계실 - 관계자 외 출입금지"와 같은 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. 표시는 냉동 경보가 작동하였을 때 비상 절차에 따라 교육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7.3 기타 사항

- (1) 용기 서비스는 냉매 충진 또는 회수를 제외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.
  - (가) 냉동 시스템으로부터 냉매 회수는 승인된 용기에 이동시켜야 한다.
  - (나) 압력 배출 장치와 가용전의 배출을 제외하고, 냉매는 하수도, 강, 하천, 호수와 같은 위치 또는 대기로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.
- (2) 냉동 시스템으로부터 냉매 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는 관련 규정에 접합하여야 하고, 회수된 냉매는 용기에 초과하여 재워서는 안 된다.
- (3) 안전밸브와 배관이 제공되지 않은 모든 용기에서 기계실에 저장된 냉매 총량은 150 kg(330 lb)를 초과할 수 없다.
  - (가) 냉매는 승인된 저장 용기에 저장되어야 한다.
  - (나) 냉매의 추가 용량은 승인된 저장 설비에 저장되어야 한다.
- (4) 냉동 시스템은 기름, 폐기물, 잔해물질 축적이 되지 않도록 청결한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고, 항상 관리되어야 한다.
  - (가) 선적, 시험, 운전, 서비스, 예비 상태 동안 대기 부분에 포함되는 냉매를 연결하는 정지 밸브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캡, 플러그, 밀폐된 잠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
  - (나) 압력 측정 설비는 정확성을 위해 체크되어야 하고 시험하는 동안 보정되고, 설비의 운전 범위에 대해 마스터 게이지와 비교하거나 데드-하중 압력게이지 테스터 중의 하나로 시험되어야 한다.
  - (다) 감지기, 경보, 기계적 통풍 시스템은 제조자의 설계서와 승인자의 요구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.

D - 6 - 2012

- (5) 25 kg(55 lb) 이상 포함하는 냉동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고장 또는 누출과 같은 경우에 감시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비상 정지 절차는 냉매 압축기에 가능한 가깝고 잘 보이게 배치하여야 한다. 예방 조치는다음과 같다.
  - (가) 비상시 시스템 정지 설명
  - (나) 이름, 주소, 주야 연락 전화번호
  - (다) 냉동 기계실이 사용될 때, 비상 절차는 기계실 외부의 각 문 부근에 비치하여야 한다. 비상 절차는 냉매 경보가 작동될 때 적합한 호흡기, 다른 예방 설비를 착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냉동 기계실 안으로 들어감을 금지해야 한다.

D - 6 - 2012

# <별표 1> 냉매 제한 량

냉매 번호 (ASHRAE 번호)	화학명	화학식	냉매 량 (g/m³)
R-11	Trichlorofluoromethane	CCl <sub>3</sub> F	25
R-12	Dichlorodifluoromethane	CCl <sub>2</sub> F <sub>2</sub>	200
R-13	Chlorotrifluoromethane	CClF <sub>3</sub>	290
R-13B1	Bromotrifluoromethane	CBrF <sub>3</sub>	350
R-14	Tetrafluoromethane (Carbon tetrafluoride)	$\mathrm{CF}_4$	240
R-22	Chlorodifluoromethane	CHClF <sub>2</sub>	150
R-113	Trichlorotrifluoroethane	CCl <sub>2</sub> FCClF <sub>2</sub>	31
R-114	Dichlorotetrafluoroethane	CCIF <sub>2</sub> CCIF <sub>2</sub>	150
R-115	Chloropentafluoroethane	CClF <sub>2</sub> CF <sub>3</sub>	430
R-134a	1,1,1,2-Tetrafluoroethane	CH <sub>2</sub> FCF <sub>3</sub>	250
R-C318	Octafluorocyclobutane	$C_4F_8$	550
R-400	R-12 and R-114	CCl <sub>2</sub> F <sub>2</sub> /C <sub>2</sub> Cl <sub>2</sub> F <sub>4</sub>	_
R-500	R-12/152a (73.8/26.2)	CCl <sub>2</sub> F <sub>2</sub> /CH <sub>3</sub> CHF <sub>2</sub>	200
R-502	R-22/115 (48.8/51.2)	CHClF <sub>2</sub> /CClF <sub>2</sub> CF <sub>3</sub>	300
R-503	R-23/13 (40.1/59.9)	CHF <sub>3</sub> /CClF <sub>3</sub>	240
R-718	Water	$H_2O$	_
R-744	Carbon Dioxide	$CO_2$	91
R-142b	1-Chloro-1,1,-Difluoroethane	CH <sub>3</sub> CClF <sub>2</sub>	60
R-152a	1,1-Difluoroethane	CH <sub>3</sub> CHF <sub>2</sub>	20
R-170	Ethane	$C_2H_6$	8
R-290	Propane	C <sub>3</sub> H <sub>8</sub>	8
R-600	Butane	$C_4H_{10}$	8.2
R-600a	2-Methyl propane (Isobutane)	CH(CH <sub>3</sub> ) <sub>3</sub>	8.2
R-1150	Ethene (Ethylene)	$C_2H_4$	6
R-1270	Propene (Propylene)	C <sub>3</sub> H <sub>6</sub>	5.9
R-123	2,2-Dichloro-1,1,1-Trifluoroethane	CHCl <sub>2</sub> CF <sub>3</sub>	6.3
R-764	Sulfur Dioxide	$SO_2$	0.26
R-40	Chloromethane (Methyl Chloride)	CH <sub>3</sub> Cl	21
R-611	Methyl Formate – 17 –	HCOOCH <sub>3</sub>	12
R-717	Ammonia	$NH_3$	0.35